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2
----------	----

발의년월일 : 1992. 2.

발의자 : 김진옥 의원
외 4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91.12.31(법률 제4464호)일과 92.2.15(대통령령 제13,586호)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설치조항 신설등 현행 위원회 조례의 전면개정이 요청됨.

2.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 설치 (안 제2조)
 - 상임위원회 구성 : 3개 상임위원회
 - 위원정수 : 상임위원회당 7 - 9명

- 상임위원회는 해당 실국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함. (안 제3조)
- 의원은 어느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됨.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음. (안 제4조)
-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수 없음. (안 제4조)
- 상임위원 임기 - 2년 (안 제5조)
-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안 제6조)
-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둠. (안 제11조)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9명

2. 산업·건설위원회 9명

3. 의회운영위원회 7명

제 3 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국,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 4 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

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수 없다.

제 5 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 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 6 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 7 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

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

제 8 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

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 9 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 10 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 11 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 12 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3 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의회위원회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의 설치) ①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 3 조(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평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 4 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 6 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 7 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8 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안산시 의회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안산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